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 (2020. 6. 1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
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-60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5월 22일(금)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5월 26일(화)

2. 제출사유

조례의 별표 중 ‘초과사용료 징수’ 및 ‘준비대관료 할인 적용’, ‘대관료 할증 및 감면’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미 해석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 초과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 수정
(안 별표 - 1.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(4)항)
 - 1회의 사용시간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가산적용에 대한 규정 정비
- 나.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 기준 수정
(안 별표 - 1.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(10)항 (나)목)
 -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2회 차부터의 할인기준 정비
- 다. 리허설, 준비, 철수 대관 할인 기준 항목 이동
(안 별표 - 1.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(7)항 및 (8항))
 - (7항) 및 (8항)을 (10항)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기준 (다목) 및 (라목)으로 이동
- 라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중 ‘유아체능단’ 삭제
(안 별표 - 2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. 개별기준 (1) 문화강좌·생활체육 프로그램)

- 유아체능단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의 설치기준 미달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, 아트센터 시설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워 문화 강좌·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0. 4. 16. ~ 5. 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5.12.)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의미해석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이며, 구체적으로는 마포아트센터 초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준비대관 사용료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먼저, 안 제12조(사용료의 징수 등)에서는 사용료를 대관료, 강습료 및 이용료 등으로 구분한 것을 ‘사용료’로 통일시킴으로써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 있음.
- 동 조례의 별표 - 1 시설사용료 가. 일반기준 4항을 개정하여 1회의 사용시간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가산 적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,
- 별표 - ‘1 시설사용료’ 가. 일반기준 7항 및 8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10항의 ‘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감면 기준 (라목) 및 (마목)으로 이동

하고 있는 바, 이는 내용상 관련 있는 규정을 같은 항으로 이동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- 별표 - ‘2 문화·체육 프로그램 사용료’ 나. 개별기준 (1)에 명시된 유아체능단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, 이는 현재 마포아트센터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른 것임.
- 위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, 마포아트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